

# 고 성 군 세 조 례 증 개 정 조 례 안

(의안번호 제614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3. 3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3. 4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3. 29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이유

-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맞게 고성군세조례를 개정하여 군세 부과·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 3. 주요골자

가.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(안 제9조)

나.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 납부방법 개선에 따른 개정

(안 제21조, 안 제22조의 2)

다.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(안 제39조)

라. 주행세 신설에 따른 정비

(안 제40조의 2, 안 제40조의 3, 안 제40조의 4, 안 제40조의 5)

마. 농지세 세율조정에 따른 개정(안 제46조)

바.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신설에 따른 개정(안 제60조)

사. 7~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 경과조치 규정 신설(안 부칙 제2항)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세법 개정 및 경상남도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규정,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 방법, 주행세 신설 등 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관련 조항을 개선·보완함은 군민에 대한 행정신뢰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음.

##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군민의 이익이 되는 부분은 소급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농지세 등은 소급 적용하면 반환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
- 답 : 우리군에서는 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

#### 6. 토 론 : 없음

#### 7. 심사결과

- 2000. 3.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